

## 독일의 전자상거래에 대한 새로운 부가가치세 과세제도

- 부가가치세 탈세 방지를 위한 온라인 오픈마켓 운영자의 정보수집 의무규정과 부가가치세 납부책임규정 도입

전 세 진

독일 뷔르츠부르크 대학교 박사과정, 법학석사

### I. 들어가며

2018년 6월 25일 독일연방재무부(Bundesministerium der Finanzen, BMF)는 연간조세입법안(Entwurf eines Jahressteuergesetzes 2018)을 공개하였다. 연방내각은 2018년 8월 1일에 이 정부입법안을 채택하였으며 입법을 위한 절차를 시작하였다. 이 입법안에 따라 부가가치세법에 인터넷 상의 오픈마켓에서 재화의 공급이 이루어진 경우 이에 상응하는 부가가치세를 조세공평에 맞게 확보하고 탈세로 인한 손실을 막기 위하여 독일 부가가치세법(Umsatzsteuergesetz, UStG) 제22f조와 제25e조가 신설된다. 제22f조에서 오픈마켓 운영자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자에 대한 광범위한 정보수집(기록)의무를 부여하였고 제25e조는 오픈마켓 운영자에게 일정한 경우에 부가가치세 납세의 책임을 부여한 규정이다. 당해 규정들은 「2017년 12월 유럽 부가가치세 제도 지침(europäischen Mehrwertsteuer - Systemrichtlinie(MwStSytRL) von Dezember 2017)」에 따라 독일 법에 들어오게 된 것이다. 유럽연합(EU)에서는 급속하게 성장하는 전자상거래의 활성화를 유도하는 가운데 조세의 중립성과 공평성을 유지할 수 있는 효율적인 과세방안을 마련하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특히 전자상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대한 전폭적인 개혁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적절히 대응하기 위하여 유럽연합은 2017년 유럽 부가가치세 제도 지침(MwStSytRL)에서 구체적인 법 개정 사항을 결정하였다.<sup>01</sup> 이와 관련하여

<sup>01</sup> EU차원에서 부가가치세 원스톱상점(One Stop Shop, OSS)을 개설하여 온라인 판매자들이 이 시스템에 등록하고 이를 통해 전체 EU 가입국에서 기록한 매출에 대하여 분기별로 환급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한 바 있다. 더불어 MOSS(Mini One Stop Shop)이라는

(국외) 전자적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제도가 2015년에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다.<sup>02</sup>

이 글에서는 입법안에서 새로 제안된 온라인 오픈마켓에서 발생한 재화의 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제도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이는 유럽연합 가입국으로서 독일이 유럽연합 차원에서 부가가치세 과세제도의 조화를 도모하기 위한 움직임이며 또한 부가가치세 과세제도의 근간인 소비지국 과세원칙에 입각하여 전자상거래영역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세 탈세와 손실을 막아 과세권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기도 하다. 이 규정들은 온라인 오픈마켓을 통해 거래되는 재화에 대하여 이미 시행되고 있는 전자적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방법과 유사한 과세절차를 마련하여 효율적인 조세행정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의미 있다.

## II. 신설되는 독일 부가가치세법 제22f조와 제25e조의 내용

### 1. 새로운 과세규정 도입의 필요성

아마존(Amazon), 이베이(eBay) 등과 같은 온라인 오픈마켓은 전 세계의 판매자와 구매자에게 물품 거래의 기회를 제공한다. 지금까지 온라인 오픈마켓을 통해 독일에 재화가 공급된 경우에 해당 거래에 상응하는 부가가치세가 납부되지 않아 많은 조세 손실이 발생하였다.<sup>03</sup> 이 외에도 온라인 오픈마켓을 통해 재화를 공급하는 자의 위치에 따라 재화의

온라인 서비스 체계를 갖추어 사업자가 회원국 중 한 곳에만 등록·신고·납부하면 유럽연합(EU) 내에서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나아가 유럽연합 외(역외) 국가의 사업자에게도 MOSS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특례규정을 두고 있다. 이들을 기반으로 한 국경을 넘는 전자적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방안이 마련된 바 있다. 이 외에도 국제적으로 발생하는 거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효율적으로 부과, 징수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sup>02</sup> EU의 전자적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제도에 대해서는 정유석, “국외 전자적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논의 발전과정과 최근 개정안 고찰”, 『경영사학』 제30집 제3호, (사)한국경영사학회, 2015, 167-189면; 박명호, “전자적 용역에 대한 EU 부가가치세 과세동향과 시사점”, 『재정포럼』,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5, 8-24면 참고. 우리나라에도 이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법 제53조의2에서 전자적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정규연/심충진, “전자적 용역 수입의 부가가치세 과세제도 개선방안”, 『세무학연구』 제34권 제2호, 한국세무학회, 2017, 9-40면; 김신언, “Cross-border에서 디지털 재화와 및 용역의 공급 장소와 과세권 -부가가치세법 제53조의2 간편 사업자등록 특례제도를 중심으로-”, 『조세학술논문집』 제31집 제3호, 한국조세학회, 2015, 251-282면 참고.

<sup>03</sup> 온라인 오픈마켓을 통하여 유럽연합 내에 공급된 재화 거래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세 탈세로 발생한 유럽연합 가입국에 수 억 유로의 부가가치세 손실이 발생하였다; BMF: Steuerbarkeit von grenzüberschreitenden Innenumsätzen zwischen Hauptniederlassung und einer Organschaft angehörenden Betriebsstätte (20. 07. 2018), <https://www.deloitte-tax-news.de/steuern/indirekte-steuern-zoll/bmf-entwurf-zur-umsetzung-des-eugh-urteil-skandia-america->

가격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경쟁중립이 훼손된다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독일을 비롯한 유럽연합 외의 국가(역외국가)에 소재한 판매자가 독일의 구매자(소비자)에게 재화를 공급한 경우에 발생한 세수입 손실이 문제로 인식되었다.<sup>04</sup> 재화가 국경선을 넘어 판매된 경우에 이는 재화의 수입으로서 원칙적으로 “재화를 수입하는 자”가 부가가치세를 부담한다. 하지만 소액물품의 경우 유럽연합세법-면세규칙 제1a조(§ 1a EUSt - Befreiungsverordnung)에 따라 22유로까지 과세가 면제되고 있어 이 재화에 대해서는 과세할 수 없으며 22유로 초과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청(Zoll)이 전수조사를 할 수 없어 신고 되지 않은 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을 수 있다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 오늘날 독일에 재화를 공급하는 역외 판매자는 역내에 창고 등을 두고 오픈마켓을 통해 거래하는 경우가 빈번한데 독일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를 소비자에게서 징수하여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 할 수 있다. 2017년 베를린에 소재한 노이쾰른(Neukölln) 세무서의 보고에 따르면 중국인인 온라인 오픈마켓상의 판매자는 5000명으로 추산되는데 2017년 5월 당해 관할 세무서에 등록된 판매자는 432명에 불과 했다.<sup>05</sup>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그 납세 방법과 절차를 모른 것인지 아니면 탈세의 의도가 있었는지를 불문하고 부가가치세가 모든 납세자에게 공평하게 부과·징수되지 않았다는 문제가 있다. 온라인 오픈마켓을 통한 거래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세 탈세를 막기 위하여 유럽연합 수준에서 이미 2017년 12월에 유럽연합 지침(Richtlinie) 2017/2455이 채택된 바 있으며 2021년부터 모든 가입국은 당해 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 이 지침에 따라서 독일은 온라인 오픈마켓 운영자의 광범위한 정보수집의무(§ 22ff UStG)와 부가가치세 납부에 대한 책임(§ 25e UStG)을 지우는 규정을 부가가치세법(Umsatzsteuergesetz, UStG)에 신설<sup>06</sup>하고 이 규정들은 2019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갖게 된다.

steuerbarkeit-von-grenzueberschreitenden-innenumsaetzen-zwischen-hauptniederlassung-und-einer-organschaft-angehoerenden-betriebsstaette.html

**04** 상대적으로 유럽연합 역내의 거래는 쉽게 포착될 수 있고 부가가치세 원스톱상점(One Stop Shop, OSS) 또는 미니원스톱상점(Mini One Stop Shop, MoSS) 서비스를 통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있다.

**05** Umsatzsteuerbetrug im Onlinehandel: Finanzministerkonferenz beschließt Entwurf einer Haftungsregel(Pressemitteilung Nr. 18-009 vom 25.05.2018) , <https://www.berlin.de/sen/finanzen/presse/pressemitteilungen/pressemitteilung.705203.php>

**06** Referentenentwurf des Bundesministeriums der Finanzen, Entwurf eines Jahressteuergesetzes 2018, p.4, 각주 1) 참고.

## 2. 온라인 오픈마켓 운영자의 정보수집의무 (부가가치세법 제22f조, § 22f UStG)

### 1) 규정의 해석

#### § 22f 온라인 오픈마켓 운영자의 특별한 의무

(1) 독일 부가가치세법 제25e조 제5항 및 제6항에서 정한 온라인 오픈마켓 운영자는 사업자의 재화의 공급(Lieferung)<sup>07</sup>에 대하여 다음의 정보를 기록하여야 한다. 이때 사업자가 행한 재화의 공급은 운영자가 제공한 온라인 오픈마켓에서 법적으로 성립된 것이고 당해 공급의 운송 또는 배송이 국내에서 시작되거나 종료된 것을 의미한다.

- ①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의 완전한 이름과 주소,
- ②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에게 조세기본법(Abgabenordnung, AO) 제21조에서 규정된 관할 세무서가 발행한 세금번호(Steuernummer) 그리고 연방중앙세무서(Bundeszentralamt für Steuern)로부터 부가가치세등록번호(Umsatzsteuer-Identifikationsnummer)를 받은 경우 이 번호,
- ③ 제2항에서 정한 확인서의 유효기간시작일과 만료일,
- ④ 운송 또는 배송의 시작지와 목적지,
- ⑤ 거래의 시점과 가격.

(2) 사업자가 아닌 자가 운영자의 온라인 오픈마켓에 (판매자로) 등록한 경우, 운영자는 제1항 제1호, 제4호 그리고 제5조에 상응하는 정보와 추가적으로 생년월일을 수집하여야 한다.

(3) 운영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사업자로부터 수집한 정보를 세무서의 요청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세무당국이 수집된 정보를 요청한 경우에 조세기본법 제93조 제1a항 제2문은 적용되지 않는다.

<sup>07</sup> 독일 부가가치세법 제3조에서 “Lieferung”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Lieferung을 번역하면 “공급, 인도”이지만 독일부가가치법에서의 공급은 사업자가 3자에게 물품의 처분권한을 공급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공급의 대상은 대부분 유형물이지만 전기(전류), 가스, 증기, 열등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의 재화도 부가가치세법상 공급될 수 있는 재화이다: Thomas Fetzer/Hans-Wolfgang Arndt, Einführung in das Steuerrecht, 4. Auflage, C.F Müller, 2012, S. 129 참고. 따라서 “Lieferung”을 “재화의 공급”이라고 번역하였다.

## 2) 온라인 오픈마켓 운영자의 개념

새로운 독일 부가가치세법 제22f조에서 온라인 오픈마켓 운영자에게 오픈마켓을 통한 판매자에 대한 정보수집의무를 규정한다. 온라인 오픈마켓 운영자에 대하여 법 제25e조 제5항과 제6항에서 규정하고 있다. 온라인 오픈마켓<sup>08</sup>은 “웹 사이트 또는 인터넷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기타 수단으로 그 운영자가 아닌 제3자가 거래를 할 수 있는 공간”이다. 그리고 온라인 오픈마켓 운영자는 “온라인 오픈마켓을 유지하고 제3자가 이곳을 통하여 거래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자”이다. 아마존(Amazon), 이베이(Ebay), 알리바바(Alibaba) 등과 같은 유명한 온라인 오픈마켓뿐만 아니라 작은 규모의 다양한 오픈마켓 운영자도 자신이 운영하는 오픈마켓을 통해 거래하는 판매자 정보를 수집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

## 3) 온라인 오픈마켓 운영자의 정보수집의무

온라인 오픈마켓 운영자는 판매자의 이름, 주소, 세금번호등과 판매자의 거래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수집해야할 의무를 부담한다. 온라인 오픈마켓의 판매자가 사업자가 아닐 때에는 추가적으로 생년월일을 수집하여야 한다. 본조 제1항 제3호의 정보는 운영자가 재화의 공급 시점에 효력이 있는 최장 3년 동안의 판매자의 납세증명서를 통해 수집될 수 있다. 이 증명서는 판매자의 신청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에서 발급된다. 관할세무서는 판매자의 납세증명서 신청에 대하여 납세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 불이행을 이유로 발급을 거절할 수 있다. 주소 또는 거소가 없는 사업자나 독일, 다른 유럽연합 가입국 또는 유럽경제지역 협정(Abkommen über den Europäischen Wirtschaftsraum)이 적용되는 국가에 고정된 장소나 그 곳에서 업무의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사업자는 독일 조세기본법 제123조 (§123 Abgabenordnung, AO)에 규정된 “독일 내 전권대리인”을 지명하여야 한다. 연방중앙세무서(Bundeszentralamt für Steuern)는 온라인 오픈마켓 운영자에게 전자적 방식으로 연방중앙세무서에 저장된 판매자의 납세증명서와 제22f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정보를 전달한다. 판매자는 납세증명서를 통하여 관련 정보가 온라인 오픈마

<sup>08</sup> 법문에서 “ein elektronischer Marktplatz”이라고 적고 있고 직역하면 “전자 시장”이다. 하지만 더 정확한 의미로서 “온라인 오픈마켓”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한다.

켓 운영자에게 제공될 것에 동의하여야 한다. 온라인 오픈마켓 운영자는 관할 세무서가 요청하는 경우에 판매자에 대하여 수집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 3. 온라인 오픈마켓 운영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책임 (부가가치세법 제25e조)

#### 1) 규정의 해석

##### § 25e 온라인 오픈마켓을 이용한 거래에 대한 책임

- (1) 온라인 오픈마켓 운영자(이하 운영자)는 자신이 제공한 전자 시장에서 합법적으로 발생한 사업자의 재화의 공급에 대한 납부되지 않은 부가가치세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
- (2) 운영자가 재화를 공급한 사업자가 그의 세금납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지 않았음을 알지 못하였거나 상인의 보통 주의의무에도 알 수 없었던 것을 세무서에 증명하면 제1항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운영자가 제22f조 제1항 제2호의 확인서 또는 제22f조 제1항 제6호의 전자확인서를 수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사실을 알거나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본다.
- (3) 운영자의 온라인 오픈마켓에 사업자가 아닌 자가 등록하고 운영자가 제22f조 제2항의 정보수집의무를 다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책임을 지지 않는다. 거래의 유형, 수량, 가격에 비추어 이 자의 거래가 사업자의 행위인 것을 알거나 보통 상인의 주의 의무로 알 수 있었을 때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 (4)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가 자신의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또는 본질적인 의미의 납세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에 관할 세무서는 직접적인 납세를 위한 다른 조치들을 약속하지 못하면 이를 운영자에게 통지할 권한을 가진다. 통지 후에는 운영자가 제2항에 해당할 때 제1항에 따라 거래에 대한 세금을 부담한다. 거래의 근거가 되는 법률행위가 통지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 운영자가 거래에 대한 세금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운영자가 제1문에 따른 통지 후에 세무서가 정한 기한 내에 재화를 공급한 사업자가 더 이상 자신이 운영하는 온라인 오픈마켓에서 거래할 수 없음을 증명하면 제2문이 적용되지 않는다. 당해 항의 1문 내지 3문은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될 수 있다.
- (5) 온라인 오픈마켓은 웹사이트 또는 인터넷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기타 수단으로서 온라인 오픈마켓 운영자가 아닌 제3자가 거래를 할 수 있는 공간이다.

- (6) 이 규정에서 운영자는 온라인 오픈마켓을 유지하고 제3자가 이곳을 통해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자이다.
- (7) 책임 결정 통지에 대한 장소적 관할권이 있는 세무서는 사업자의 재화의 공급에 대한 과세가 이루어지는 관할 세무서이다.
- (8)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가 독일, 독일 외의 유럽연합 가입국 또는 유럽경제지역 협약이 적용되는 국가에 주소 또는 거소, 사업장 또는 업무관리장소가 없는 경우에 조세기본법 제219조는 적용되지 않는다.

## 2) 온라인 오픈마켓 운영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책임

새로운 법규정은 온라인 오픈마켓의 운영자에게 자신의 오픈마켓을 통한 재화가 거래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세가 판매자에 의해 납부되지 않았을 때 그에 대한 납세의 책임을 부여한다. 이 규정은 온라인 오픈마켓 운영자에게 사실상 부가가치세 납부에 대한 연대책임을 질 것을 요구한다. 이 책임은 온라인 오픈마켓 운영자가 납세의무자인 판매자가 부가가치세를 성실히 납부하지 않았음을 알지 못했거나 상인의 보통 주의의무에도 그를 알 수 없었음을 증명하면 면제된다. 온라인 오픈마켓 운영자가 제22f조에 따른 판매자에 대한 정보수집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경우에 책임을 면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유효한 납세 증명서를 통해 판매자에 대한 정보가 수집되었는지가 중요하다. 나아가 판매자가 사업자로 등록되지 않은 경우이고 운영자는 정보수집의무를 다 하였을 때 거래의 종류, 수량 또는 가격에 비추어 보아 대상 거래를 사업자의 거래로 볼 수 없는 경우에도 이 책임은 면제된다. 재화의 거래로 발생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자는 “사업자”로 한정되기 때문이다. 새로운 규정은 납세의무자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 관할 세무서는 이를 온라인 오픈마켓 운영자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통지를 받은 운영자는 판매자가 그 오픈마켓에서 더 이상 거래할 수 없도록 차단할 것을 강제한다.

## III. 시사점

원칙적으로 재화의 공급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사업자이다. 따라서 온라인 오픈마켓의 운영자는 단순히 거래를 중개하는 자로서 재화의 공급이 이루어지는 거래행위의 당사자



가 아니며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sup>09</sup> 새로운 부가가치세법 규정은 온라인 오픈마켓 운영자에게 판매자의 과세정보를 비롯한 거래의 정보를 수집할 것을 의무화하고 일정한 경우에 납세의무자가 이행하지 않은 부가가치세 납부에 대한 책임을 부여한다. 결국 온라인 오픈마켓 운영자는 부가가치세 손실에 대한 위험책임을 지게 되고 이는 연대책임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온라인 오픈마켓 운영자는 위험책임을 부담하지 않기 위하여 납세자에 대한 정보수집의무를 반드시 이행하고자 할 것이며, 이 과정에서 성실하지 않은 납세의무자인 판매자는 운영자의 온라인 오픈마켓에서 거래를 할 수 없게 된다. 이 결과로 역외국가의 판매자는 독일 또는 유럽연합 내에 (OSS 또는 MOSS를 이용하여)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온라인 오픈마켓을 통해 독일로 재화를 공급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새로운 제도를 통하여 국내 또는 역내에서 제공되는 재화인지 해외에서 제공되는 재화인지를 불문하고 독일에서 소비되는 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탈세를 막고 보다 간편하게 부가가치세를 징수할 수 있다. 이러한 부가가치세 탈세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는 전자적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특례규정과 같은 과세방식을 취하고 있다는 점에서 재화의 공급인지 전자적 용역의 제공인지를 불문하고 온라인 오픈마켓에 대한 세금 부과·징수절차를 예상할 수 있어 납세절차를 단순화 할 수 있고 조세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전자적 용역에 있어서 온라인 오픈마켓이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경우가 있다. 온라인 오픈마켓을 통한 거래에 대해서는 거래대상이 재화인지 용역인지를 불문하고 온라인 오픈마켓 운영자가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과세 절차를 간소화 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온라인 오픈마켓 운영자는 판매자에게 과거의 납세증명 및 거래에 대한 정보를 요구하게 되고 오픈마켓을 이용하고자 하는 판매자는 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를 통하여 온라인 오픈마켓은 신뢰할 수 있는 판매자에게 거래의 기회를 제공할 확률이 높아진다. 따라서 온라인 판매 사기 등의 위험이 줄어들게 되어 소비자는 오픈마켓의 판매자를 믿고 물건을 구매할 수 있게 된다.

이 제도의 시행으로 면세범위 내의 재화를 온라인 오픈마켓을 통해 판매하면 수입되는 재화와 달리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는 점에서 과세공평이 침해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

<sup>09</sup> 온라인 오픈마켓은 판매자에게 거래의 기회를 제공하고 일정한 수수료 등 대가를 지불받을 수 있다. 온라인 오픈마켓과 판매자 사이에서 발생한 과세문제는 이 글에서 다루지 않기로 한다.



다. 결국 역외 판매자가 온라인 오픈마켓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판매자가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지 않게 되므로 오픈마켓을 이용하지 않는 거래가 늘어날 수 있다. 하지만 수입되는 재화에 대해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소매물품에 적용되는 면세를 2021년부터 일괄 폐지하기로 한 바 이 문제는 향후에 제거될 것으로 보인다.

## IV. 결론

온라인을 통한 새로운 국제적 거래 유형에 대하여 소비지국에서는 지속적으로 당해 거래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세의 과세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탈세 및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독일연방재무부는 온라인 오픈마켓 운영자에게 판매자에 대한 정보수집의무를 부과하고 오픈마켓을 통해 이루어지는 거래로 발생한 부가가치세가 납부되지 않은 경우에 운영자가 납세책임을 부담하게 하는 제도를 새로이 마련하고자 하는 입법안을 제안하였다. 이 규정들은 2018년 하반기에 입법절차를 거쳐 2019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갖는다. 이러한 움직임은 소비지국 과세원칙을 강화하여 독일에서 소비되는 재화에 철저하게 과세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독일의 과세관청은 이 제도의 도입을 통해 그동안 과세하지 못했던 재화의 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sup>10</sup> 하지만 이 규정이 현실에서 제대로 작동되려면 역내, 역외 사업자에게 온라인을 통한 사업자등록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 독일 전역 나아가 유럽연합 내의 모든 세무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 설비를 갖추어야 하므로 상당한 비용이 예상된다는 점에서 우려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독일에 전자적 방식, 온라인을 이용한 행정서비스의 제공을 확충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있으며 우선적으로 부가가치세 과세행정의 영역에서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2019년부터 이 규정이 적용됨에 따라 현실적인 문제들이 발생할 것이며 이 규정들에 대한 논의는 더 활발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제도의 입법으로 독일이 해외에서 판매되는 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탈세를 제대로 방지할 수 있을지 그리고 발생하는 문제들에 어떻게 대응하는지 관심을 갖고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

<sup>10</sup> Umsatzsteuerbetrag im Onlinehandel: Finanzministerkonferenz beschließt Entwurf einer Haftungsregel(Pressemitteilung Nr. 18-009 vom 25.05.2018) , <https://www.berlin.de/sen/finanzen/presse/pressemitteilungen/pressemitteilung.705203.php>

---

## 참고문헌

Referentenentwurf des Bundesministeriums der Finanzen, Entwurf eines Jahressteuergesetzes  
2018

Thomas Fetzner/Hans-Wolfgang Arndt, Einführung in das Steuerrecht, 4. Auflage, C.F Müller,  
2012.

## 보도자료

Onlinehandel: Neue Vorschriften gegen Umsatzsteuerbetrug (28. 05. 2018) <https://www.der-betrieb.de/meldungen/onlinehandel-neue-vorschriften-gegen-umsatzsteuerbetrug/>

BMF: Steuerbarkeit von grenzüberschreitenden Innenumsätzen zwischen Hauptniederlassung und einer Organschaft angehörenden Betriebsstätte (20. 07. 2018) <https://www.deloitte-tax-news.de/steuern/indirekte-steuern-zoll/bmf-entwurf-zur-umsetzung-des-eugh-urteil-skandia-america-steuerbarkeit-von-grenzueberschreitenden-innenumsaetzen-zwischen-hauptniederlassung-und-einer-organschaft-angehoerenden-betriebsstaette.html>

Umsatzsteuerbetrug im Onlinehandel: Finanzministerkonferenz beschließt Entwurf einer Haftungsregel(Pressemitteilung Nr. 18-009 vom 25.05.2018) <https://www.berlin.de/sen/finanzen/presse/pressemitteilungen/pressemitteilung.705203.php>